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영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」 일부개정(’23.1.3 공포)에 따라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(이하 ‘플랫폼’이라 한다)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,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,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위해 방지,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(안 제5조의2)

- 지역별 인가·허가 사업장 정보, 사업장의 종사자 수, 지역별 인구 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

나.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(안 제5조의3)

- 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부여

다.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위해 발생 방지(안 제5조의4)

-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데이터의 회수 및 제공 중단

라. 플랫폼 활용 촉진(안 제5조의5)

- 플랫폼의 구축·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3.9. ~ 2023.4.17.)

3) 행정규제 : 국조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 없음 확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) 법 제15조의5 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

1. 지역별 인가·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2. 지역별 인구,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
3.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, 차량등록 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
4.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
5.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
6.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
7. 소상공인 관련 정부지원 자료 또는 정보
8.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관련 자료 또는 정보
9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(이하 ‘플랫폼’이라 한다) 구축 및 운영에 필요

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

제5조의3(데이터의 안전성 확보)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등을
사용·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제공
받은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
하여야 한다.

1. 제공받은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
2.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3. 제공받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
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
4. 제공받은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
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
5.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
6.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
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

제5조의4(데이터등을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위해 방지) ① 중소벤처기업부
장관은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가
위해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영향
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제공된
데이터를 회수하거나,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

제5조의5(플랫폼 활용 촉진) 법 제15조의7제2항에서 ‘플랫폼의 구축·운영

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'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
2.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등
3.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 서비스 등의 플랫폼 탑재 또는 연계 등
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설></u>	<u>제5조의2(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)</u> <u>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.</u> <u>1. 지역별 인가·허가 사업장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</u> <u>2. 지역별 인구, 가구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</u> <u>3.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, 차량등록 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</u> <u>4.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</u> <u>5. 지역별 사업체 자료 또는 정보</u> <u>6.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</u> <u>7. 소상공인 관련 정부지원 자료 또는 정보</u> <u>8.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관련 자료 또는 정보</u> <u>9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(이하 ‘플랫폼’이라 한다)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</u>
<u><신설></u>	<u>제5조의3(데이터의 안전성 확보)</u>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등을 사용·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	1. 제공받은 데이터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·시행 2.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. 제공받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. 제공받은 데이터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.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.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 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
<신설>	제5조의4(데이터등을 활용한 제품·서비스의 위해 방지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·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제공된 데이터를 회수하거나, 데이터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.
<신설>	제5조의5(플랫폼 활용 촉진) 법 제15조의7제2항에서 ‘플랫폼의 구축·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’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 1. 플랫폼 관련 데이터의 제공 및 공유 2.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및 확산 지원 등 3.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 서비스 등의 플랫폼 탑재 또는 연계 등 4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 활성화를

현행	개정안
	<u>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25